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47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2
※ 참고자료	8
1. 보험 및 공제가입 관련 참고조항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0.
3. 회 부 일: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장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안 제9조제3항 신설), ②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97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의 이용)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u><신설></u>	법률 제20997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의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1조¹⁾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4항²⁾에 따르면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결정(국립학교의 경우)이나 지방자치단체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지원 조례’ 등 개별 규정(공·사립학교의 경우)을 통해 체육시설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으로 파손된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생활체육 도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8조³⁾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인 학교장이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1)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⑤·⑥ (생략)

3)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⁴⁾.

- 동 개정안은 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②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③ 생활체육시설로 개방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이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전국 11,871개교⁵⁾의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생활체육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4) 의안번호 제2201852호,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동 개정안은 2026년 1월 23일 시행되었음.

5) 2025년 기준, 초등 6,192개교, 중등 3,292개교, 고등 2,387개교(출처:e-나라지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현황]

사업	지원 내용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문체부)	○사업내용: 개방 학교체육시설에 관리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관리매니저 자격 및 역할																							
	<table><tr><td>자격</td><td>-학교개방, 시설관리, 참가자 통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등 -(우대사항)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td></tr><tr><td>역할</td><td>-학교개방업무 총괄, 지역 주민 모집, 시설 관리 및 홍보 등 -스포츠지도 업무, 지역 내 리그전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td></tr></table>	자격	-학교개방, 시설관리, 참가자 통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등 -(우대사항)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	역할	-학교개방업무 총괄, 지역 주민 모집, 시설 관리 및 홍보 등 -스포츠지도 업무, 지역 내 리그전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자격	-학교개방, 시설관리, 참가자 통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등 -(우대사항)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																						
	역할	-학교개방업무 총괄, 지역 주민 모집, 시설 관리 및 홍보 등 -스포츠지도 업무, 지역 내 리그전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원 현황																							
-2024년: 173개교 공모, 120개교 선정(전국 초·중·고 12,027개교)																								
<table><tr><td>연도</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d>2023</td><td>2024</td></tr><tr><td>예산 (백만원)</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98</td></tr><tr><td>지원 개교</td><td>155</td><td>168</td><td>156</td><td>155</td><td>150</td><td>120</td><td>120</td></tr></table>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백만원)	4,131	4,131	4,131	4,131	4,131	4,131	4,198	지원 개교	155	168	156	155	150	120	120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백만원)	4,131	4,131	4,131	4,131	4,131	4,131	4,198																	
지원 개교	155	168	156	155	150	120	120																	
주1) 국민체육진흥기금 세부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5161-301)’ 중 내역사업																								
주2)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대한체육회, 보조율 100%)																								
주3) 2024년 기준, 교당 350만원(사업비120+인건비230)*10개월*120개교																								

주1) 국민체육진흥기금 세부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5161-301)’ 중 내역사업

주2)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대한체육회, 보조율 100%)

주3) 2024년 기준, 교당 350만원(사업비120+인건비230)*10개월*120개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장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여지가 있음.

-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교육감’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만 규정⁶⁾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되어 있고, ‘학교의 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둘째,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시설 이용에 대해 국립학교의 시설은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⁷⁾한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법령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중 보험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공제 프로그램을 예시로 명시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조례위임 규정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상충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7)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8) <문화체육관광부 수정 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② (생략)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② (개정안과 같음)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등 18개 기관은 학교의 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는 학교시설 개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학교시설공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며, 학교의 장에 대한 민사상 면책규정이 있음에도 이용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항 간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7

현 행	개 정 안	수정 의견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u>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③ ----- ----- <u>관할 시도의 교육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u> ④ (개정안과과 같음) <삭 제>

※참고자료: 보험 및 공제가입 관련 참고조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④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나. 장해보상비

다. 간병비

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생활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 체육인 복지법 및 시행령

■체육인복지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